



# 프랑스 법조(法曹) 노동조합의 구성과 활동

양승엽 (프랑스 낭트대학교 법정대학 법과사회변화연구소 부연구원)

## ■ 머리말

올 2월 10일 프랑스의 판사들은 대규모로 파업을 하였다. 전국 193개 법원 가운데 170여 곳이 참여한 이 파업은 유례가 없는 대규모 파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사태의 진원은 사르코지 대통령의 사법부 비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낭트 지방의 한 10대 어린 소녀가 살해된 사건에서 범인이 전과 15범의 누범으로 밝혀지자,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 사건의 원인은 법원이 범죄자 관리를 허술하게 한 데에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해 판사들은 이는 법원의 구조적인 문제로 부족한 인원과 지원 아래에서는 제대로 된 업무를 볼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하였다. “우리 일곱 명에서 무려 10,600건의 사건을 다뤄야 한다”는 보비니 지역 판사들의 이야기는 현 프랑스 법원의 과중한 업무를 잘 대변하고 있다.<sup>1)</sup>

프랑스 법원 파업의 중심에는 프랑스 사법관(司法官, Magistrature)들<sup>2)</sup>의 노동조합인 사법관노동조합연합(Union Syndicale des Magistrats: USM)과 사법관노동조합(Syndicat de la

1) 2010년 2월 8일자 리베라시옹(Liberation)지.

<http://www.liberation.fr/societe/01012318706-a-bobigny-on-gere-plus-de-10-600-dossier-a-sept-vous-vous-rendez-compte> 참조.

2) 프랑스의 법조인은 크게 사법관(司法官, Magistrature)과 변호사(Avocat)로 나뉜다. 그리고 사법관은 다시 판사(Magistrat du siège)와 검사(Magistrat du parquet)로 구분된다. 판사와 검사가 같

[사진 1] 집회를 하고 있는 USM과 SM 소속 사법관들



[사진 2] 행진을 하고 있는 SAF 소속 변호사들



Magistrature: SM)이 있었다.<sup>3)</sup> 우리에게서는 판사들의 파업이 생소한데 더군다나 판사들의 노동조합이라 하니 더욱 낯설기 그지없다. 그러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프랑스에서는 판사 노조는 당연한 것이며 복수노조 또한 인정한다. 그리고 법조계의 또 다른 축인 변호사(Avocat)들도 그들의 노동조합인 프랑스변호사노동조합(Syndicat des Avocats de France: SAF)을 조직하여 그들의 이익을 보호한다. 이하에서는 프랑스 법조 노동조합의 종류 및 구성과 활동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sup>4)</sup>

이 사법관이라 불리는 이유는 이들을 양성하는 곳이 같은 국립사법관학교(Ecole National de la Magistrature)이며 프랑스의 검찰은 비록 업무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 받지만 법제는 법원의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제 때문에 판사와 검사의 보직이 서로 바뀌는 일도 흔하다. 변호사는 각 지방의 변호사협회에서 별도의 교육을 통해 배출한다.

3) [사진 1], [사진 2] 참조.

4) 조직에 관해서는 사법관노동조합연합(USM)을 중심으로, 활동에 대해서는 사법관노동조합(SM)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 법조 노동조합의 종류와 구성 및 활동

### 사법관노동조합연합(USM)<sup>5)</sup>

USM은 프랑스 사법관노조 중 최대 단체이다. 1974년 조직되었으며 기존에 있던 ‘사법관연방연합(Union fédérale des magistrats: UFM)<sup>6)</sup>’을 대체하며 창립되었다. 8,200여 명의 사법관 중 2,000여 명이 조합원이며 직종별 선거(사법관 최고회의 선거)에서 62.2%의 득표를 하였다.

구성원을 보면, 판사와 국립사법관학교 학생(우리의 사법연수원생)인데 현직과 휴직을 불문하며 심지어 퇴직한 사법관까지도 가입할 수 있다. 예비 법조인이라 할 수 있는 국립사법관학교 학생까지 노동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USM은 후술할 사법관노동조합(SM)에 비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USM의 정관에서도 노동조합 자체가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등 정치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을 것을 정하고 있다.

이들의 정관에 따른 목적을 보면, 먼저 사법작용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둘째로 사법관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하며, 특히 사법관의 채용, 교육, 승진 등에 관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접근 가능하며 효율적이고 인간적인 사법을 위해 제도 와 권리의 발전을 꾀한다는 것이다.

조직을 보면 먼저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총회에서 조합의 주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며 예산을 승인한다. 그리고 전국위원회가 채택한 내규를 비준한다. 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2년마다 조합장과 전국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출한다. 내규에 따라 조합원의 투표 위임이 가능하다. 만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총회의 의결이 전체 조합원을 구속함은 물론이다.

전국위원회가 총회에서 결정된 주요한 결정들을 실행한다. 전국위원회의 위원은 26인이며 그 중 8명 이상은 2급 이하의 판사, 국립사법관학교 학생, 퇴직한 판사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어

5) 주된 내용은 USM의 홈페이지인 <http://www.union-syndicale-magistrats.org/web/index.php> 참조.

6) 1945년에 직종별 연맹으로 출범하였다.

야 한다. 전국위원회의 소집은 조합장이 반기에 1회 이상 하거나 전국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이루어지며, 안건 또한 전국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만일 전국위원회 위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그 위원은 해임된다.

조합장 아래에 사무국이 구성되는데 전국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이 직접 시행되는 곳이다. 구성은 조합장 아래 부조합장, 사무총장, 부사무총장, 재무부장, 부재무부장, 편집부장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중 결원이 없는 한 세 명 이상은 고등법원 소속이어야 한다. 만일 전국위원회가 열릴 수 없다면 사무국이 전국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한다. 전국위원회 위원과 사무국원은 겸직할 수 있다. 그리고 사무국은 총회의 사무국 역할을 겸하여 총회의 행정처리를 담당한다. 사무국 산하의 재무부는 재정을 관리하는데 재정은 조합원들의 조합비와 공적 및 사적 지원금,<sup>7)</sup> 기부, 유증과 이자로 충당된다. 조합비는 재정보고서에 따라 전국위원회가 결정한다. 회계는 연 1회 결산을 하며 지역위원회의 재정은 전국위원회와는 별도로 운영된다.

각 지방법원 단위로 지부가 결성되고 고등법원 단위로 지역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역시 2년마다 선거를 치러 각 집행부를 이룬다. 이 지역위원회가 지부의 활동을 돕고 구체화한다. 은퇴한 법관은 최종 근무지가 아니라 그들의 거주지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위원회의 소속이 된다. 국립사법관학교 학생들도 별도의 지부를 이룬다. 지역위원회의 사무국장은 전국위원회의 위원이 맡으며, 지역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각 지부들을 소집한다.

조합원은 일정한 경우 자격을 상실하는데 먼저 조합원이 3개월 이상 조합비를 연체할 경우 조합을 탈퇴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제명이 되는데 의결이 되기 전 대상자는 소명 기회를 가진다.

## 사법관노동조합(SM)<sup>8)</sup>

위의 USM을 잇는 두 번째 노동조합이다. 1968년 창설되었고 직종별 선거에서 사법관의 약

7) USM과 후술할 사법관노동조합(SM)은 법무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조합원은 활동을 위해 일정량의 업무를 면제 받고 각 조합별 비율에 따라 휴직 기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기부의 형태나 물적 시설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기도 한다.

8) 주된 내용은 SM의 홈페이지인 <http://www.syndicat-magistrature.org/> 참조.

30%의 득표를 하였다. 전국대회에서 16인의 각 지역대표를 선출하고 다시 이들 중에서 6인을 선출하여 집행부를 이룬다.

이들의 활동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는 역시 정관에 잘 나오고 있는데 크게 사법관의 본분을 다하는 것과 이들의 직업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사법관의 본분에 대해서는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재판에 임하기 위해 사법관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과 민주주의의 제 원칙과 자유를 수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들의 직업적 이익을 위해서는 사법관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문 외에 사법관의 채용, 교육, 인사, 조직, 기능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선한다는 것과 조합원인 사법관들에게 당국의 계획과 노동조합의 대책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법관의 독립과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공익 속에 이들의 직업적 이익(사익)을 조화시키려 한 것이 돋보인다.

이들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지침을 제시하는데 먼저, 사법관의 독립성을 지켜 만인이 평등한 재판을 받게 한다. 그리고 둘째, 재판 과정에서 모든 이들에게 공평히 대하여, 셋째로, 사회적 강자(권력자)의 범죄, 특히 경제사범에게는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 넷째는 사법관은 개인의 자유를 지키고 정치적인 박해와 미디어의 압박에 대한 피난처가 되어 줌으로써 헌법이 수여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다한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로 사법관의 독립성을 지키고 경찰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경찰 권력과 사법부 사이의 불균형을 다룬다는 것이다. 이를 보건대, 사법관이 지켜야 할 공정한 재판이라는 본질적 목적 이외에도 경제사범과 경찰력에 대한 경계와 견제가 특징이다. 이들 둘이 하나는 사적 거인이고 하나는 공적 거인이라는 점에서 시민과 사회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사법관들의 고민이 보인다.

행동지침에 따른 좀 더 세부적인 활동을 살펴보면 우선 직업적 활동으로, 사법부의 독단을 막기 위해 상호간에 교류하고 토론을 벌이며, 다른 노동조합 및 각종 직업단체와 활발히 모임을 갖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노동조합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발표활동과 문헌간행을 행한다. 문헌 중에 유명한 것으로 “정의(Justice)”가 있다. 둘째는 제도적 활동으로 노동조합의 대표들은 사법관 최고회의와 사법발전위원회, 그리고 국립사법관학교 행정위원회에 참석한다. 그리고 판사들이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사법당국과 사법체계에 관여를 한다. 셋째로 시민과의 교류 활동을 들 수 있는데, 사법의 독립성은 비단 판사들만의 일이 아니라 전체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균형을 위해 지켜내야 하는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시민사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하며 다양한 단체<sup>9)</sup>와 함께 일한다. 넷째는 여론 활동이다. 노동조합은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그들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언론과 정당들에게 홍보를 한다. 다섯째가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 활동이다. 노동조합이 지키는 법의 정의와 법관의 독립성은 범(汎)유럽적이면서 범(汎)세계적 가치관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유럽 차원의 사법조직인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유럽 법조계 (Magistrats européens pour la démocratie et les libertés: MEDEL)'<sup>10)</sup>의 일원이 된다.

### 변호사노동조합(SAF)<sup>11)</sup>

1974년 창설되었으며 정관에 따른 창설 목적을 보면 첫째, 변호사직과 변호사들의 독립성을 비타협적으로 보호하며, 둘째, 특권의 행사와 확장에 대항하며, 셋째, 변호사들의 원활한 활동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직역의 도덕적 영역과 물질적 영역을 보호한다. 그리고 넷째, 사법체계를 좀 더 민주적이며 시민들에게 다가서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를 다하며, 마지막 다섯째로 자유권과 변호를 받을 권리를 수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SAF는 구체적인 활동으로 전국변호사위원회<sup>12)</sup>에 참여하며 다양한 시민단체들과 토론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매년 말 총회를 열어 다음해의 의제를 결정한다. SAF의

9) 이러한 단체에는 인권단체, 변호사단체, 외국인과 범죄자 보호단체, 그 외에 여러 노동조합을 꼽을 수 있다.

10) MEDEL은 1985년 결성된 단체로서 유럽 6개국의 10개 법조 노동조합의 연합체로 시작하였으며 법관과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 기준으로는 유럽 10개 국가의 15개 법조 노동조합이 가입하고 있으며 조합원 수는 15,000여 명이다. 이 단체의 설립목적은 첫째,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고, 둘째는 각 국가들의 민주주의를 존중하며, 셋째로 유럽의 민주 사법 문화를 증진시키며, 넷째는 법정의 민주화를 이루며, 다섯째로 법조인의 표현의 자유와 단결권을 지키며, 마지막으로 소수자, 특히 이민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후견의 관점에서 중시한다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http://www.medelnet.org/pages/89\\_1.html](http://www.medelnet.org/pages/89_1.html) 참조.

11) 주된 내용은 SAF의 홈페이지인 <http://www.lesaf.org/> 참조.

12) 전국변호사위원회(Conseil National des Barreaux)는 전국적인 직종별 단체로서 변호사의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변호사 교육을 담당하며, 법률서비스에 접근하기 쉽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활동과 관심사는 그 해의 총회에서 결정되는데, 2010년 11월에 결정된 의제를 보면 접근 가능한 법률서비스, 변호사 연수생들의 지위 향상, 외국인의 권리 침해로 정해졌다.

조직은 조합장을 중심으로 사무총장, 재무부장, 그리고 6인의 사무국원으로 집행부를 구성한다.

## ■ 맺음말

이상으로 프랑스 법조계를 대표하는 세 노동조합의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보았다. 프랑스의 법조 노동조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법조계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면 법무법인에 고용된 변호사들은 법률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 이후 대규모로 배출될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에 고용될 것을 예상하면, 그들의 직업적 이익을 위해 프랑스처럼 직종별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 또한 가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사업의 경영을 담당하거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법무법인의 파트너급 변호사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인 법관과 검사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먼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률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6조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가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이고, 제2호가 특정직 공무원<sup>13)</sup> 중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그리고 제3호가 기능직 공무원이며, 마지막 제4호가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및 계약직 공무원이다. 따라서 특정직 공무원 5급 이상이며 외무행정과 외교정보관리와는 상관이 없는 법관과 검사는 노동조합을 결

13)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따르면 법관과 검사,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성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법관과 검사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먼저 그들은 5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이라는 점과 일반직 공무원보다 좀 더 국가와 특별권력관계(특수신분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 그리고 그들이 수행하는 임무에서 나오는 특수성에서 기인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급수(5급)가 단순히 높다고 해서 그들을 노동조합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고위 공무원이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은 마치 일반 사업장에서 일정 직급 이상의 근로자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지만, 사업장에서의 상황과는 별도로 실제로 법관과 검사가 평소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법관과 검사는 평소 그 직무와 관련하여 그 아래 직급인 법원 및 검찰 공무원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라고 할 수 있는 국가를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법원과 검찰청은 직분과는 별도의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바, 일반적인 평판사와 평검사가 하위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관여하는 것은 거의 없다. 그리고 국가와 특별권력관계에 있다는 점은 공무원의 노동3권을 인정하는 추세에서 별 의의가 없으며, 법관과 검사가 수행하는 임무의 특수성도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평판사와 평검사의 인사와 승진 등을 관리하는 직급 이상의 법관과 검사직을 제외하고 평판사와 평검사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단결권을 인정하는 현 법제와 맞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 법조 노동조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도 프랑스처럼 법조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법조 노동조합이 그들의 직업적 이익만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성과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 사법구조에 대한 개선과 이민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성명 발표 등 공익활동 또한 충실히 수행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법조계에 대한 인식이 권위적이고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의 많은 분쟁들이 앞으로 좀 더 법치주의적 시각에서 해결되기 위해서는 법조 노동조합의 공익활동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KLI**